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89

발의연월일: 2025. 1. 23.

발 의 자:이용우・박해철・정혜경

박지원 • 이수진 • 김태선

김 윤 • 이강일 • 이학영

이광희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3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하여, 재직 근로자 중 1명 이상을 해당 기관의 이사로 임명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가 같은 해 8월부터 도입되었음.

그러나 「공공기관운영법」은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추천 절차에 관하여 개별 법령의 규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제26조제4항), 개별법에 별도의 추천 절차가 규정된 준정부기관은 해당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 노동이사제 도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특히 이러한 문제의 원인이 된 「공공기관운영법」 해당 조항은 노동이사제 도입 과정에서 새롭게 신설된 것이 아니라, 종전에 있던 규정을 단순히 별도 항으로 이전한 것에 불과함.

이에 「공공기관운영법」 제26조제3항의 규정과 동일하게 「한국산

업인력공단법」에서도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여, 한국산업인력공 단에서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 중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 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비상임이사에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 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법률 제 호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전단 중 "임원추천위원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임원추천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사용자대표
- 2. 근로자대표
- 3. 근로자평생능력개발과 자격제도·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 4.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 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근로자 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혂 행 제7조(임원) ① ~ ③ (생 략) 제7조(임원)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하 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 직이사 외의 비상임이사는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임원추천위원회-----임명한다. 이 경우 비상임이사 ----. 이 경우 제4호에 해당 는 사용자대표, 근로자대표 및 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하여야 한 근로자평생능력개발과 자격제 다. 도 · 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 하여야 한다. <신 설> 1. 사용자대표 <신 설> 2. 근로자대표 3. 근로자평생능력개발과 자격 <신 설> 제도 · 자격검정 등에 관한 전 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4.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신 설> 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의 대
	표자를 말한다)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